

연구공동체 <건강과 대안> 공부 모임

“인권 이론의 최신 동향과 사회권: 《인권의 대전환》을 중심으로”

2009. 11. 10

조효제 (성공회대 사회과학부)

| 인간의 기본권을 보장해 주기 위해 누가 비용을 부담해야 하는가?

-상호성 개념: 혜택과 부담을 직접 연결시킴. 예) 사적인 계약

-공화주의적 개념: 연대와 시민적 덕목.

·연대: 개인이 자유로우려면 사회도 잘 되어야 한다 (개인 자유를 위한 수단)

·시민적 덕목: 사회적 참여 (비용 부담을 포함한) 자체가 개인의 완성 (목적 자체)

-해악 원칙 (harm principle)의 재구성: 원래는 소극적 개념. 그러나 타인의 상황을

개선해주지 않는 것도 해악을 끼치는 것. 이때 적극적 의무가 재규정됨

| 권리와 의무

-모든 권리는 소극적 자유와 적극적 자유를 포함

예) 프라이버시, 집회의 자유, 건강권, 생계권

-국가의 모든 의무는 소극적 (자기억제) 의무와 적극적 의무를 포함

·모든 권리는 소극적 의무와 적극적 의무를 동시에 발생시킨다

·권리에 대해 소극적 의무와 적극적 의무를 적절히 배합해야 함

예) 생명권에 대한 의무, 표현의 자유에 대한 의무, 거주권에 대한 의무

예) 부르디외의 “국가의 왼손, 국가의 오른손” 이론: 아래 참조

| (국가의) 의무의 종류

-존중할 의무: 간섭하지 않을 의무

-보호할 의무: 어떤 개인이 제3자로부터 침해받지 않도록 그 개인을 보호할 의무

-충족시킬 의무: 어떤 권리가 실현되도록 지원해 줄 의무

-입법화할 의무

| 적극적 의무 (1): 적극적 의무는 확실하게 정하기 어려운가?

=> 불확정성 논쟁 (indeterminacy)

=> 불확정적인 의무는 사법적으로 심사할 수 없는가? (justiciability)

-예를 들어, ‘건강권’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정할 수 있는가?

- 이 점은 인권의 ‘표제적’ 성격과 연동된 까다로운 질문
- 소극적 의무 = 규정 (rules) = 절대적 구속력 (absolute binding force) 보유
- 적극적 의무 = 원칙 (principles) = 자명한 구속력 (prima facie binding force) 보유
 - ‘원칙’의 규범적 힘 = 법으로 결정하고 그 준수를 강제할 수 있는 힘이라기보다, ‘최적화를 향한 요구’ (optimization requirements)라 할 수 있음
 - 원칙은 자명한 구속력을 갖지만 경우에 따라선 다른 원칙의 지배를 받을 수도 있다. 그러므로 적극적 의무는 서로 경합하는 여러 원칙들의 맥락 내에서 결정 가능
 - 그러므로 원칙들 간의 무게 비교, 또는 맥락에 따라 어떤 원칙에 우선순위를 둘 것인가 하는 문제가 중요하다
- 어떤 원칙을 더 무거운 원칙으로 간주할 것인가?:
 - ‘최소한의 핵심 원칙’
 - 어떤 원칙이 다른 원칙에 비해 우선순위를 가질 수 있는 특정한 상황을 미리 열거해 놓을 수 있음: 예) 절대 생계가 위협받을 가능성 있는 상황에서는 생명권이 재산권보다 우선순위를 가진다

- | 적극적 의무 (2): 보호할 의무: 어떤 개인이 어떤 가해자로부터 인권침해를 당하지 않도록 그 개인을 보호할 의무
- 어떤 개인 A, 가해자 B
 - A가 자신의 권리를 보호받을 권리 있지만, B 역시 인간으로서 최소한의 권리를 지니고 있음 (그러므로 국가는 B가 가해자라는 이유로 그를 무조건 억압할 수는 없다)
 - 그렇다면 A의 인권과 B의 권리를 어떻게 비교할 수 있나?
 - 1) A가 보호받을 권리: 국가가 그의 권리를 적극적으로 보호해 줄 의무 존재
 - 2) B의 최소한의 권리: 국가가 그에게 부당하게 간섭하지 않을 소극적 의무 존재
 - 3) 두 권리 간의 무게를 결정할 때 고려해야 할 원칙과 제약요소 있음
 - 제도적 권한 원칙: 전문성, 정당성을 지닌 사람들이 의사결정에 참여할 원칙
 - 경합하는 자원의 원칙: 예산 상의 고려
 - 사실적 제약 요소: 현대 사회의 구조적 애로사항, 인간행동의 불가 예측성 등
 - 4) 위의 모든 점들을 고려해서 ‘최적화’ 상태를 결정해야 한다
 - 예를 들어, 소위 ‘나영이’ 사건을 위의 4가지 차원으로 해석할 수 있는가?

- | 적극적 의무 (3): 충족시킬 의무
- 어떤 의무가 확정적이 되려면 사전에 그 내용을 미리 정해 놓아야 하는가?
 - 예) 건강권이 국가의 확정적인 의무가 되려면 건강권의 내용을 미리 정해 놓아야?

- 적극적 의무는 어떤 구체적인 재화나 서비스의 제공 등 미리 내용을 정해 놓을 수 있지만
- 구체적인 내용이 아니라 어떤 행동을 할 수 있는 권리에 관한 것일 수도 있다.

예) 주거권을 '인권'으로서 요구할 수 있는 권리

- 또한 적극적 의무는 개개인에게 구체적 권리를 충족시켜 주는 '대상에 대한 권리'일 수도 있지만, 그러한 권리를 위한 제도적 조치를 취하게 하는 '행동에 대한 권리'일 수도 있다

예) 주거권이 인권이라고 할 때 그것이 각 개인에 대한 개별적인 권리인가, 국가가 주거권을 위해 정책을 취하도록 할 수 있는 집합적 권리인가?

- 적극적 의무를 국가가 수행하고 있다는 사실을 무슨 근거로 판단할 수 있는가?: 적극적 의무의 '구성요건 이론': 다음이 충족될 때 인권 보장된다고 할 수 있음

- 유효성: 건강 결정인자들에 영향 미치는 기본 요소들 구비
- 참여성: 건강 관련 의사결정 시 주민, 국민의 참여 보장
- 책무성: 국가가 건강권을 위해 최선을 다했음을 '설명'할 수 있어야
- 평등성: 모든 이가 저렴하게 합당한 수준의 건강-의료 서비스 받을 수 있어야.

특히 저소득 계층에 대한 평등성 보장

| 적극적 의무 (4): progressive (전향적이고 지속적인 의무)

- 적극적 의무가 최적화를 해야 하는 의무이지만 그것은 다음과 같은 의무를 진다
 - 아무리 형편이 어렵더라도 현 재정상황이 허용하는 한도 내에서 최대한 노력해야
 - 권리 실현 상황을 즉시 점검해야
 - 평등한 권리행사를 보장해야
- '인권적 정부 투자'를 평가하는 방법
 - 투자의 충분성: 건강권의 경우 적어도 GDP의 5%
 - 지출의 효율성: 예산 지출의 현황
 - 지출의 형평성: 젠더, 지역, 계급 등등
- 적극적 의무가 '유효하게' 지속적으로 이루어지는가를 판별하는 방법
 - 구조적 지표: 핵심 구조와 메커니즘
 - 과정 지표: 프로그램, 활동, 개입 내용
 - 결과 지표: 측정가능하고 비교가능한 구체적 성과